◈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6-62호

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# 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 1. 개정이유

가변속 전력구동기기(PDS) 및 무정전 전원장치(UPS) 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대해 일부 시험항목 삭제 및 전도성장해 허용기준 완화 등 국제표준(PDS : IEC 61800-3, UPS : IEC 62040-2) 부합화

## 2. 주요내용

가. 무정전전원장치(UPS)의 전자파적합성 기준(안 별표 10)

- 기존 “멀티미디어 기기류 전도성 장해 허용기준 준용”이라는 문구 대신 환경 등급별(C1,C2,C3)로 완화된 별도 기준값 마련
- UPS 기기의 전자파내성 등 시험이 필요한 포트에 대한 UPS 구성도 삽입
- 전자파내성 일반요구상 및 성능평가 기준에서 일부 기준 삭제(4→3개)

나. 가변속 전력구동기기(PDS)의 전자파적합성 기준(안 별표 13)

- 기존 사용환경 정의(제1·2환경)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(가정, 상업, 경·공업, 산업)으로 수정
- 평형3상 기기 중 기존 특정 조건(a, b, c)으로 적용하는 기준 외에 추가 조건(d, e, f)으로 적용할 수 있는 완화된 기준 마련
- 방사성방해 시험에서 기존의 측정거리 10m 이외에 소형기기 한해 3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
- 방사성방해 시험에 대한 1㎓ 이상 대역 기준 마련
- 저주파수 내성 시험(8종) 중 총고조파 왜곡률, 정류 노치, 전압 편차, 전압 불평형 총 4개 시험 삭제

## 3. 의견제출

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12월 28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(참조 : 전파환경안전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자료

라. 보내실 곳 :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

o 주소 :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(우편번호 : 58323)

o 전화 : 061)338-4521

o 팩스 : 061)338-4519

o 전자우편 : dwkim91@korea.kr

※ 홈페이지(http://www.rra.go.kr) 이용방법 : 홈페이지 접속 → 민원·참여 → 전자공청회